

개정 전

개정 후

거룩한빛광성교회 규약

거룩한빛광성교회 규약

1차 개정안 2003년 12월 21일 공동의회 통과  
2차 개정안 2004년 12월 19일 공동의회 통과  
3차 개정안 2005년 10월 23일 공동의회 통과  
4차 개정안 2007년 9월 16일 공동의회 통과  
5차 개정안 2008년 12월 7일 공동의회 통과  
6차 개정안 2011년 12월 18일 공동의회 통과  
7차 개정안 2012년 12월 16일 공동의회 통과  
8차 개정안 2013년 12월 8일 공동의회 통과  
9차 개정안 2016년 6월 5일 공동의회 통과  
10차 개정안 2018년 9월 30일 공동의회 통과  
11차 개정안 2022년 7월 3일 공동의회 통과

1차 개정안 2003년 12월 21일 공동의회 통과  
2차 개정안 2004년 12월 19일 공동의회 통과  
3차 개정안 2005년 10월 23일 공동의회 통과  
4차 개정안 2007년 9월 16일 공동의회 통과  
5차 개정안 2008년 12월 7일 공동의회 통과  
6차 개정안 2011년 12월 18일 공동의회 통과  
7차 개정안 2012년 12월 16일 공동의회 통과  
8차 개정안 2013년 12월 8일 공동의회 통과  
9차 개정안 2016년 6월 5일 공동의회 통과  
10차 개정안 2018년 9월 30일 공동의회 통과  
11차 개정안 2022년 7월 3일 공동의회 통과  
12차 개정안 2025년 2월 23일 공동의회 통과

## 거룩한빛광성교회 규약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과 소속)

- ① 본 교회 명칭은 거룩한빛광성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한다.
-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이하 “총회”라 한다) 서울서북노회에 속한다.
- ③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에 둔다.

#### 제2조(목적)

본 규약은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바른 교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신앙고백)

본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다.

#### 제4조(목회철학과 비전)

- ① 본 교회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3대 목표를 목회 철학으로 한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규약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과 소속)

- ① 본 교회 명칭은 거룩한빛광성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한다.
- ②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이하 “총회”라 한다) 서울서북노회에 속한다.
- ③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에 둔다.

#### 제2조(목적)

본 규약은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바른 교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신앙고백)

본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다.

#### 제4조(목회철학과 비전)

- ① 본 교회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3대 목표를 목회 철학으로 한다.

- ② 본 교회는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양·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세계선교 중심센터”라는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실천이념)

- ① 담임(위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시무장로 6년 단임제를 시행한다.
- ② 원로목사, 원로장로를 두지 않는다.
- ③ 교회재정의 50% 이상을 대외 사역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평신도는 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노력한다.
- ⑤ 교회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기관

제6조(기관)

- ① 전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열린 공동의회, 열린 제직회, 열린 당회를 둔다.

- ② 본 교회는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양·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세계선교 중심센터”라는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실천이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실천이념으로 둔다.**

- ① 교회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위해 노력한다. **(5항을 1항으로 옮김)**
- ② 담임(위임)목사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매 6년마다 재신임하며, 원로목사를 두지 않는다.**
- ③ 시무장로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시무장로 6년 단임제를 시행하며, 원로장로를 두지 않는다. **(1항과 2항을 조정하고, 위임목사와 시무장로 분리)**
- ④ 교회재정의 50% 이상을 대외 사역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노력한다.**
- ⑤ 평신도는 교회 **사역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장 협의체 및 기관

제6조(기관)

- 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동의회, 열린제직회, 열린당회를 둔다.

- ②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자치적으로 사역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 ③ 사역조직(부서, 단체 등)은 회칙(규정), 사업계획 등을 열린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사업 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절 열린공동의회

#### 제7조(구성)

- ① 열린공동의회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 ② 열린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로 한다.

#### 제8조(소집)

- ① 열린공동의회는 매년 1회 정기 소집한다.
- ② 열린공동의회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열린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열린제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4.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 제9조(공고 및 개회성수)

의장은 열린공동의회 소집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결의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고, 개회성수는 열린공동의회 출석인원으로 한

- ②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자치적으로 사역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 ③ 사역조직(부서, 단체 등)은 회칙(규정), 사업계획 등을 열린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사업 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절 열린공동의회

#### 제7조(구성)

- ① 열린공동의회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 ② 열린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로 한다.

#### 제8조(소집)

- ① 열린공동의회는 매년 11월과 12월에 2회 정기 소집한다.
- ② 열린공동의회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열린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열린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열린제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4.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 제9조(공고 및 개회성수)

의장은 열린공동의회 소집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결의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고, 개회성수는 열린공동의회 출석인원으로 한

다.

제10조(의결사항)

- ① 열린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 승인
  - 2. 인사에 관한 사항
    - 가. 담임목사의 청빙 및 위임, 담임(위임)목사의 재신임에 관한 사항
    - 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 3. 규약 개정
  - 4. 노회, 열린당회, 열린제직회,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 등이 요구한 사항
  - 5. 기타 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 ② 담임목사 청빙, 장로 선출, 규약 개정은 투표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안건[담임목사 위임 및 담임(위임)목사의 재신임 포함]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열린제직회

제11조(구성)

- ① 열린제직회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단, 일반 교인(직분을 받지 않은 교인)은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열린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맡고, 서기와 감사는 회의에서 선정한다. 회장 유고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회의

다.

제10조(의결사항)

- ① 열린공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 승인
  - 2. 인사에 관한 사항
    - 가. 담임목사의 청빙 및 위임, 담임(위임)목사의 재신임에 관한 사항
    - 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 3. 규약 개정
  - 4. 노회, 열린당회, 열린제직회,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 등이 요구한 사항
  - 5. 기타 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 ② 담임목사 청빙, 장로 선출, 규약 개정은 투표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안건[담임목사 위임 및 담임(위임)목사의 재신임 포함]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열린제직회

제11조(구성)

- ① 열린제직회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단, 일반 교인(직분을 받지 않은 교인)은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② 열린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맡고, 서기와 감사는 회의에서 선정한다. 회장 유고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회의

를 주재하되, 임시당회장은 의결권이 없다.

제12조(소집)

- ① 열린제직회는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열린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열린제직회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
  - 2. 열린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열린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13조(공고 및 개최성수)

회장은 열린제직회 소집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결의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며, 개최성수는 열린제직회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14조(의결사항)

- ① 열린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열린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에 관한 사항
  - 3. 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 4.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건축에 관한 사항
  - 5. 열린공동의회 소집 요구
  - 6. 기타 교회 운영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
- ② 열린제직회 결의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를 주재하되, 임시당회장은 의결권이 없다.

제12조(소집)

- ① 열린제직회는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열린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열린제직회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
  - 2. 열린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열린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13조(공고 및 개최성수)

회장은 열린제직회 소집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결의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며, 개최성수는 열린제직회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14조(의결사항)

- ① 열린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열린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에 관한 사항
  - 3. 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 4.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건축에 관한 사항
  - 5. 열린공동의회 소집 요구
  - 6. 기타 교회 운영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
- ② 열린제직회 결의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제3절 열린당회

#### 제15조(구성)

- ① 열린당회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 자치회장(청년회장, 여전도회 연합회장, 남선교회 연합회장, 권사회 연합회장, 안수집사회 연합회장)과 운영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열린당회에는 회장, 서기를 두며, 담임(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당회장 궐위시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노회에 요청하여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가 임시 당회장이 된다. 단, 임시당회장은 의결권은 없다.
- ③ 대리당회장은 당회장 유고시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자로 한다.
- ④ 서기는 열린당회에서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서기는 당회원들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토록 조율하고, 중요 서류를 보관, 관리하며, 열린당회 결의 사항을 운영협의회에 설명한다.
- ⑤ 사역장로를 포함한 확대당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확대당회는 의결권이 없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당회는 확대당회의 의견을 교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6조(소집)

- ①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매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당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
  2.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제3절 열린당회

#### 제15조(구성)

- ① 열린당회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 자치회장(청년회장, 여전도회 연합회장, 남선교회 연합회장, 권사회 연합회장, 안수집사회 연합회장)과 운영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열린당회에는 회장, 서기를 두며, 담임(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당회장 궐위시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노회에 요청하여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가 임시 당회장이 된다. 단, 임시당회장은 의결권은 없다.
- ③ 대리당회장은 당회장 유고시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자로 한다.
- ④ 서기는 열린당회에서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서기는 당회원들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토록 조율하고, 중요 서류를 보관, 관리하며, 열린당회 결의 사항을 운영협의회에 설명한다.
- ⑤ 사역장로를 포함한 확대당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확대당회는 의결권이 없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당회는 확대당회의 의견을 교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6조(소집)

- ① 정기 열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매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 열린당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
  2.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열린공동의회 또는 열린제직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4.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17조(조직과 활동)

- ① 열린당회는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역별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사역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역팀은 특성에 따라 본부, 팀, 부, 단, 대로 명명할 수 있다.
- ③ 사역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린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④ 위원회 및 사역팀의 장은 열린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역별 위원회(사역팀 포함)의 신설, 변경, 통합, 분할, 폐지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 3. 열린공동의회 또는 열린제직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4.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제17조(공고 및 개회성수)

- ① 당회장은 소집 1주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후보, 벽보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시 열린당회는 예외로 한다)
- ② 열린당회는 열린당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7조 공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9조 개회성수를 제17조에 포함시킴)

제18(17→18)조(조직과 활동)

- ① 열린당회는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역별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사역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역팀은 특성에 따라 위원회, 본부, 팀, 부, 단, 대로 명명할 수 있다.
- ③ 사역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린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④ 위원회 및 사역팀의 장은 열린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사역별 위원회(사역팀 포함)의 신설, 변경, 통합, 분할, 폐지는 기획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심의를 거쳐 열린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 ① 특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자산위원회, 소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분립개척위원회를 둔다. 필요시 열린당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는 전임교역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③ 자산위원회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건축 포함),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④ 소통위원회는 당회와 성도 사이의 소통을 담당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관한 후보자 추천 및 선거에 관한 과정을 담당한다.
- ⑥ 분립개척위원회는 교회의 분립 및 개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⑦ 상설 특별위원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열린당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⑧ 상설 특별위원회의 장은 열린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⑨ 모든 특별위원회는 열린당회 소속으로 하며, 열린당회에 직접 보고한다.

제19(18→19)조(특별위원회)

- ① 상설 특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분립개척위원회를 둔다. 필요시 열린당회의 결의로 임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산위원회, 소통위원회 삭제)
- ② 인사위원회는 전임교역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③ 항 삭제 (자산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통합)
- ④ 항 삭제 (소통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통합)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관한 후보자 추천 및 선거에 관한 과정을 담당하며, 기타 교회의 중요 사항에 관한 투표를 주관한다.
- ④ 분립개척위원회는 교회의 분립 및 개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⑤ 모든 상설 및 임시 특별위원회는 열린당회 소속으로 하며,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열린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7항과 9항을 통합하고 수정함)
- ⑥ 모든 특별위원회의 장은 열린당회의 결의로 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시 특별위원회는 설립목적 달성이 되었을 때에는 해산한다.)
-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당회에 보고하고, 열린당회가 결의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개회성수)

열린 당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20조(직무)

열린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 ① 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교회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③ 교역자의 청빙, 재신임, 연임, 처우에 관한 사항
-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에 관한 사항
- ⑤ 부서장 인선과 부서의 신설 및 해산
- ⑥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 선정, 노회 및 총회에 대한 보고 및 청원
- ⑦ 각 부서에 대한 감사
- ⑧ 교인의 권징 (근신, 정직, 출교), 교인의 이명, 증서의 교부와 접수
- ⑨ 직원의 임면, 징계, 처우에 관한 사항
- ⑩ 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⑪ 규약의 개정
- ⑫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⑬ 교회의 분립, 개척에 관한 사항
- ⑭ 학교법인 광성학원과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의 임원 추천 및 추인, 기관장 추인에 관한 사항

제19조(개회성수) -> 제17조로 통합

제20조(직무)

열린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 ① 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교회의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③ 교역자의 청빙, 재신임, 연임, 처우에 관한 사항
-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에 관한 사항
- ⑤ 부서장 인선과 부서의 신설 및 해산
- ⑥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 선정, 노회 및 총회에 대한 보고 및 청원
- ⑦ 각 부서에 대한 감사
- ⑧ 교인의 권징 (근신, 정직, 출교), 교인의 이명, 증서의 교부와 접수
- ⑨ 직원의 임면, 징계, 처우에 관한 사항
- ⑩ 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⑪ 규약의 개정
- ⑫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⑬ 교회의 분립, 개척에 관한 사항
- ⑭ 학교법인 광성학원과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 장터사회적협동조합 및 부속기관(평생교육원, 지혜모아 등)의 임원 추천 및 추인, 기관장 추인에 관한 사항

⑮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의 (재)수탁에 관한 사항

⑯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안건의 처리 등)

- ① 열린당회에 보고 및 공지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당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 ② 열린당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규약 개정, 장로후보 선정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록은 당회서기가 일시, 장소, 회원,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 후 회의 후 2주일 이내에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 1회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열린당회는 열린 당회로 운영하고, 교회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를 허용할 수 있고, 교회방송을 통해 중계할 수 있다.
- ⑤ 열린당회는 각 자치회장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
- ⑥ 열린당회는 세례교인(입교인)명부, 유아세례교인명부, 책벌 및 해벌 교인명부, 실종교인명부, 이명교인명부, 혼인명부, 별세명부, 비품대장, 부동산대장 등을 비치한다.

제4절 운영협의회

⑮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의 (재)수탁에 관한 사항

⑯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안건의 처리 등)

- ① 열린당회에 보고 및 공지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당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 ② 열린당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규약 개정, 장로후보 선정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록은 당회서기가 일시, 장소, 회원,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 후 회의 후 2주일 이내에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 1회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열린당회는 열린 당회로 운영하고, 교회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를 허용할 수 있고, 교회방송을 통해 중계할 수 있다.
- ⑤ 열린당회는 각 자치회장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
- ⑥ 열린당회는 세례교인(입교인)명부, **아동세례교인명부**, 유아세례교인명부, 책벌 및 해벌 교인명부, 실종교인명부, 이명교인명부, 혼인명부, 별세명부, 비품대장, 부동산대장 등을 비치한다.

제4절 운영협의회

제23조(구성)

운영협의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 당회서기, 선임부목사로 구성한다.

제24조(회장)

운영협의회장은 열린당회의 인준을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기능)

- ① 운영협의회는 부서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 부서와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협의하여 당회에 건의 한다.
- ② 열린당회는 운영협의회 건의사항을 교회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제5절 자치기관

제26조(설치와 운영)

- ① 본 교회에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기관을 둔다.
  1.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2. 남선교회, 여전도회, 목장
  3. 교육위원회 안에 청년회, 학생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모든 자치기관의 회칙은 열린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말 그 활동 상황 및 재정 상태를 결산하여 열린당

제22(23→22)조(구성)

운영협의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 각 자치회장, 당회서기, 부목사 중 1인으로 구성한다.

제23(24→23)조(회장)

- ① 운영협의회장은 열린당회의 인준을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
-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추가)

제24(25→24)조(기능)

- ① 운영협의회는 부서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 부서와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협의하여 당회에 건의 한다.
- ② 열린당회는 운영협의회 건의사항을 교회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절 자치기관

제25(26→25)조(설치와 운영)

- ① 본 교회에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기관을 둔다.
  1.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2. 남선교회, 여전도회, 목장
  3. 교육위원회 안에 청년회, 학생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모든 자치기관의 회칙은 열린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말 그 활동 상황 및 재정 상태를 결산하여 열린당

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6절 행정조직

#### 제27조(조직과 기능)

- ① 본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 사역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일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린당회 산하에 행정실을 두며 사무장과 행정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당회장은 열린당회의 결의에 따라 행정실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8조(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행정, 시설관리, 재정, 미디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은 열린당회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열린당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③ 열린당회는 직원에 대한 징계(경고, 근신, 감봉, 해임, 파면)를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제3장 교인

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6절 행정조직

#### 제26(27→26)조(조직과 기능)

본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 사역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목사(사무장)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항 삭제

#### 제27(28→27)조(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행정, 시설관리, 재정, 미디어, 식당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은 인사위원회의 발의와 열린당회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열린당회에서 삭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③ 열린당회는 직원에 대한 징계(경고, 근신, 감봉, 해임, 파면)를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제3장 교인

#### 제28(29→28)조(자격 및 구분)

제29조(자격 및 구분)

- ① 교인의 자격은 본 교회의 기본 정신과 규약에 동의하고 교회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 ②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교인이 된 후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 2.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 3.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 ④ 교인의 이명,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30조(권리와 의무)

- ①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교인은 공동예배와 목장예배 및 해당 선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교인의 자격은 본 교회의 기본 정신과 규약에 동의하고 교회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 ②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교인이 된 후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 3. 아동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7세 이상 12세 이하)로서 아동세례를 받은 자
  - 4.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교인 또는 아동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 ④ 교인의 이명,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29(30→29)조(권리와 의무)

- ①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교인은 공동예배와 목장예배 및 해당 선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제4장 직분

### 제31조(총론)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둔다. 모든 직분은 차별이 없으며 구별될 뿐이다.
- ② 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임기 및 신임 제도를 둔다.
- ③ 원로목사, 원로장로 등 원로제도는 두지 않는다.
- ④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세칙은 열린당회의 결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한다.

## 제1절 교역자

### 제32조(목사)

- ①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 목회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사역자이다.
- ② 목사는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청빙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해서는 청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④ 전임목사는 담임(위임)목사와 부목사로 구별되며, 필요에 따라 전담목사를 둘 수 있다. 담임(위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여 사역하는 목사이며, 전담목사는 담임(위임)목사가 위

## 제4장 직분

### 제30(31→30)조(총론)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둔다. 모든 직분은 차별이 없으며 구별될 뿐이다.
- ② 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임기 및 신임 제도를 둔다.
- ③ 원로목사, 원로장로 등 원로제도는 두지 않는다.
- ④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세칙은 열린당회의 결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한다.

## 제1절 교역자

### 제31(32→31)조(목사)

- ①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 목회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사역자이다.
- ② 목사는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우리 교회의 규약(제4조, 제5조)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 중에서** 청빙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임목사는 담임(위임)목사와 부목사로 구별되며, 필요에 따라 전담목사를 둘 수 있다. 담임(위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여 사역하는 목사이며, 전담목사는 담임(위임)목사가 위임한 전문사역을 수행하는 목사이다. 부목사는 담임(위임)목

임한 전문사역을 수행하는 목사이다. 부목사는 담임(위임)목사가 요청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목사이다.

- ⑤ 담임목사는 당회와 열린공동의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전담목사와 부목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 ⑥ 담임(위임)목사는 매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
- ⑦ 담임(위임)목사 재신임이 부결된 경우 교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담임(위임)목사가 이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⑧ 전담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열린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으며,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노회에 연임청원을 한다.
- ⑨ 담임(위임)목사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의 11월 30일로 하고, 원로목사제도는 두지 않는다.
- ⑩ 목사와 장로의 친족(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전담목사 및 부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 제33조(전도사)

- ① 전도사는 담임(위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사역자이다.
- ② 전도사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학업 중이거나 수료한 자 중에서 열린당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위임)목사가 임면한다.

사가 요청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목사이다.(④항을 ③항으로)

- ④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해서는 청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한다.(③항을 ④항으로 이동)
- ⑤ 담임목사는 당회와 열린공동의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전담목사와 부목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열린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 ⑥ 담임(위임) 목사는 매 6년마다 회기말 3개월 이전에 열린공동의회에서 투표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 ⑦ 담임(위임)목사 재신임이 부결된 경우 교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담임(위임)목사가 이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⑧ 전담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열린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으며,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노회에 연임청원을 한다.
- ⑨ 담임(위임)목사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의 11월 30일로 하고, 원로목사제도는 두지 않는다.
- ⑩ 목사와 장로의 친족(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전담목사 및 부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 제32(33→32)조(전도사)

- ① 전도사는 담임(위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사역자이다.
- ② 전도사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학업 중이거나 수료한 자 중, 우리 교회의 규약(제4조, 제5조)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 중에서 열린당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위임)목사가 임면한다.



- ③ 전도사의 임기는 전임 전도사 2년, 파트 전도사 1년으로 하며, 열린당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교역자에 대한 처우)

- ① 담임(위임)목사의 보수, 휴가, 안식년, 퇴직금, 연금 등에 관해서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담임(위임)목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 ② 전담목사, 부목사의 보수, 휴가, 퇴직금, 연금 등에 관해서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부목사 등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인사위원회가 운영한다.
- ③ 부목사의 교회 분립, 개척 지원 등에 관해서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부목사 등 교회 개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분립개척위원회가 운영한다.
- ④ 기타 교역자에 대한 처우는 열린당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절 장로, 집사, 권사

제35조(장로)

- ① 열린당회에서 교인을 대표하고 정책과 감사와 권징 등을 담당하는 장로를 시무장로라 하며, 시무기간이 끝나고 사역하는 장로를 사역장로라 한다.
- ② 여성시무장로가 시무장로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③ 부부장로는 동시에 시무할 수 없다.
- ④ 시무장로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선출인원수를 산정 받

- ③ 전도사의 임기는 전임 전도사 2년, 비전임 전도사 1년으로 하며, 열린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33(34→33)조(교역자에 대한 처우)

- ① 담임(위임)목사의 보수, 휴가, 안식년, 퇴직금, 연금 등에 관해서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담임(위임)목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 ② 전담목사, 부목사의 보수, 휴가, 퇴직금, 연금 등에 관해서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부목사 등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인사위원회가 운영한다.
- ③ 부목사의 교회 분립, 개척 지원 등에 관해서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부목사 등 교회 개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분립개척위원회가 운영한다.
- ④ 기타 교역자에 대한 처우는 열린당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절 장로, 집사, 권사

제34(35→34)조(장로)

- ① 열린당회에서 교인을 대표하고 정책과 감사와 권징 등을 담당하는 장로를 시무장로라 하며, 시무기간이 끝나고 사역하는 장로를 사역장로라 한다.
- ② 여성시무장로가 시무장로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③ 부부장로는 동시에 시무할 수 없다.
- ④ 시무장로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선출인원수를 산정 받

아 열린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5개월 이상 열린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 ⑤ 시무장로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5세 이상 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 혹은 권사로 임직한 지 5년 이상 경과(단,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나 권사는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로 취임한 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자치기관 및 사역조직에서 부서장(위원장, 본부장, 부장, 팀장, 단장, 대장, 지구장, 자치회 연합회장)으로 2년 이상 섬긴 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⑥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 교회 출석 3년(봉사 2년) 이상 경과 후 열린당회의 추천을 받아 시무장로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 ⑦ 시무장로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의 11월 30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 ⑧ 시무장로의 연령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 ⑨ 시무장로는 급여를 받으면서 직원(교회, 학교법인 광성학원,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수탁기관 제외), 장터사회적협동조합, 문화센터, 평생배움터, 지혜모아 등)으로 근무하거나 봉사할 수 없다.

제36조(안수집사/권사)

- ① 안수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출석 3년(봉사 2년) 이상인 자로서 35세 이상인 남성 중에서 선출한다.

아 **우리 교회의 규약(제4조, 제5조)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 중에서** 열린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5개월 이상 열린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 ⑤ 시무장로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5세 이상 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 혹은 권사로 임직한 지 5년 이상 경과(단,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나 권사는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로 취임한 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자치기관 및 사역조직에서 부서장(위원장, 본부장, 부장, 팀장, 단장, 대장, 지구장, 자치회 연합회장)으로 2년 이상 섬긴 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⑥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 교회 출석 3년(봉사 2년) 이상 경과 후 열린당회의 추천을 받아 시무장로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 ⑦ 시무장로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의 11월 30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 ⑧ 시무장로의 연령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 ⑨ 시무장로는 급여를 받으면서 직원(교회, 학교법인 광성학원,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수탁기관 제외), 장터사회적협동조합, 문화센터, 평생배움터, 지혜모아 등)으로 근무하거나 봉사할 수 없다.

제**35(36→35)**조(안수집사/권사)

- ① 안수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출석 3년(봉사 2년) 이상인 자로서 35세 이상인 남성

- ②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출석 3년(봉사 2년) 이상인 자로서 45세 이상인 여성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안수집사/권사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5개월 이상 열린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은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 ④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집사/권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 교회 출석2년(봉사 1년) 이상 경과 후 안수집사/권사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 ⑤ 안수집사/권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제37조(서리집사)

- ①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된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교인 중에서 열린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 ②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시무사임과 사직)

- ①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 ②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열린당회 및 열린공동의회 결의로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임권고를 받은 자는 사임서를 열린당회

중에서 선출한다.

- ②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출석 3년(봉사 2년) 이상인 자로서 45세 이상인 여성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안수집사/권사는 열린당회가 정한 교육을 받고, 열린당회의 결의와 열린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 ④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집사/권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 교회 출석2년(봉사 1년) 이상 경과 후 안수집사/권사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 ⑤ 안수집사/권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제36(37→36)조(서리집사)

- ①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된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교인 중에서 열린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 ②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7(38→37)조(시무사임과 사직)

- ①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 ②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열린당회 및 열린공동의회 결의로 시무사임을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시무의 휴무)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가 휴무코자 할 경우 열린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시무의 복직)

- ① 자의로 사임한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가 복직하려면 열린당회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 ② 권고사임의 경우는 권고사임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열린당회의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관리

제41조(재정의 원천)

본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 기증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2조(재정운용 기본원칙)

-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권고할 수 있으며, 사임권고를 받은 자는 사임서를 열린당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39→38)조(시무의 휴무)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가 휴무코자 할 경우 열린당회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9(40→39)조(시무의 복직)

- ① 자의로 사임한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가 복직되려면 열린당회의의 결의로 복직될 수 있다.
- ② 권고사임으로 사임된 시무장로/안수집사/권사가 복직되려면 권고사임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후 1년이 경과되고 당회원의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제5장 재정관리

제40(41→40)조(재정의 원천)

본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 기증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1(42→41)조(재정운용 기본원칙)

-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② 재정은용은 월별.분기별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수입과 지출은 그 해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교회 재정의 50% 이상이 대외 사역을 위해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43조(예산.결산 확정절차)

세입.세출의 예산과 결산은 열린당회 및 열린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중에 열린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확정한다.

제44조(예산편성 절차)

- ① 각 위원회와 기관.단체는 예산요구서를 10월말까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위원회는 예산요구서를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편성하고, 열린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5조(추가예산 요구절차)

- ① 각 위원회와 기관.단체 등이 추가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내용.시행기간 및 이에 따른 예산 소요금액과 그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명확히 기재한 추가예산요구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예산요구서를 받은 예산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의 결의에 의해 확정한다.

- ② 재정은용은 월별.분기별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수입과 지출은 그 해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하여 그 목적과 한도에 맞게 편성하고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교회 재정의 50% 이상이 대외 사역을 위해 집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노력한다.(제5조4항에 맞춤)

제42(43→42)조(예산.결산 확정절차)

세입.세출의 예산과 결산은 열린당회 및 열린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은 12월중에, 예산은 11월중에 열린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확정한다.

제43(44→43)조(예산편성 절차)

- ① 각 위원회와 기관.단체는 예산요구서를 10월말까지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위원회는 예산요구서를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편성하고, 열린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4(45→44)조(추가예산 요구절차)

- ① 각 위원회와 기관.단체 등이 추가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내용.시행기간 및 이에 따른 예산 소요금액과 그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명확히 기재한 추가예산요구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예산요구서를 받은 예산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열린당회에 보고하고, 열린당회의 결의에 의해 확정한다.

제46조(예산항목 변경절차)

각 위원회와 기관·단체 등이 예산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항목 변경신청서를 미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항목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47조(현금취급 관리기준)

각 위원회와 기관·단체 등은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잔액에 대해 반드시 그 취급책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

- ① 각 위원회 및 예산을 사용한 기관, 단체 등은 매년 1 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실시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규약 개정 등

제49조(규약 개정절차)

- ① 규약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의된다.
  - 1. 열린당회가 개정을 요구할 때
  - 2.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이 개정을 요구할 때
- ② 규약의 개정은 규약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작성한 후 열린당회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열린공

제45(46→45)조(예산항목 변경절차)

각 위원회와 기관·단체 등이 예산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항목 변경신청서를 미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항목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46(47→46)조(현금취급 관리기준)

각 위원회와 기관·단체 등은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잔액에 대해 반드시 그 취급책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제47(48→47)조(감사)

- ① 각 위원회 및 예산을 사용한 기관, 단체 등은 매년 1 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실시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규약 개정 등

제48(49→48)조(규약 개정절차)

- ① 규약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의된다.
  - 1. 열린당회가 개정을 요구할 때
  - 2.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이 개정을 요구할 때
- ② 규약의 개정은 규약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작성한 후 열린당회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열린공

동의회에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약 개정안은 당회장이 1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 보존 연한)

당회록은 영구 보존하며, 일반 서류의 보존 연한은 5년, 각종 회계 서류의 보존 연한은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보존 연한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일반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련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동의회에서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약 개정안은 당회장이 1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50→49)조(자료 보존 연한)

당회록은 영구 보존하며, 일반 서류의 보존 연한은 5년, 각종 회계 서류의 보존 연한은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열린당회의 결의로 보존 연한을 정할 수 있다.

제50(51→50)조(일반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련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0. 6. 11.)

본 규약은 2000. 6. 11.부터 시행한다.

초 안 법학박사 김충구 집사  
감 수 장영효 집사

2000년 3월 26일 기획위원회 통과  
2000년 4월 16일 운영위원회 통과  
2000년 5월 28일 운영위원회 제2차 통과  
2000년 6월 4일 제직회 통과  
2000년 6월 11일 공동의회 통과

부 칙 (2003. 12. 21.)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19.)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3.)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11.)

본 규약은 2000. 6. 11.부터 시행한다.

초 안 법학박사 김충구 집사  
감 수 장영효 집사

2000년 3월 26일 기획위원회 통과  
2000년 4월 16일 운영위원회 통과  
2000년 5월 28일 운영위원회 제2차 통과  
2000년 6월 4일 제직회 통과  
2000년 6월 11일 공동의회 통과

부 칙 (2003. 12. 21.)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19.)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3.)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6.)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7.)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8.)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6.)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8.)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5.)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30.)

1.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32조제10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청빙하는 전담목사 및 부목사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2007. 9. 16.)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7.)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8.)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6.)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8.)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5.)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30.)

1.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32조제10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청빙하는 전담목사 및 부목사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2022. 7. 3.)

1.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35조제10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전입하는 협동장로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2022. 7. 3.)

1.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35조제10항은 본 규약 시행일 이후 전입하는 협동장로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2025. 2. 23.)

1. 본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